

Landscape Review

Vol.13 조경정보

Contents

도시농업

- 02 도시농업 제도의 검토와 미래 발전방향
- 06 공동주택단지에서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엿보다
- 08 공원형 도시농업
- 1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 제도의 검토와 미래 발전방향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경기도 안성시 출신 김학용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2일 공포되었고, 2012년 5월 23일이면 법이 시행

된다. 법의 제정은 현장에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분위기이다. 자칫 법의 틀에 매어 자유롭게 이루어져 오던 활동들이 위축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민간 부분 활동들의 경험에서 나온 우려들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도시농업 제도는 지방에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이 없었어도 많은 곳에서 도시농업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 부평에서는 2011년 6월 도시농업공원이 개장되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0년 9월에 도시농업에 대한 모델 학습원이 조성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기존에 해오던 옥상녹화 사업에 옥상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2009년 10개 학교, 2010년에 10개 학교 그리고 2011년에는 15개 학교에 학교농장을 조성해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서울과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팜스쿨 시범사업을 2010년과 2011년에 시행하였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도 1992년부터 텃밭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고 2005년에 도시농업팀을 만들었다. 경기도 또한 2010년에 도시농업팀을 만들었다. 서울시청에서도 2011년 13개의 친환경주말농장을 운영하였다. 서울의 강동구청은 도시농업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가구 1텃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도 이미 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3개



소 400구좌를 분양하였다. 이미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도시농업 보급 확대 차원에서 해오던 상자텃밭도 경기농림진흥재단과 강동구청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부산시도 도시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오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했고, 부산시는 2011년 3월에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김포한강지구에서는 한라건설이 단지내 공동체 텃밭을 설계했다. (재)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도 2011년 3월에 '도시농부의 하루' 전을 개최하였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011년 12월 도시농업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도시농업을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보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지도자를 양성해온 전국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농업기술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5개 기관과 단체가 임의단체 형식으로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온 도시농업이 이제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의 최고의 관건이다.

이 글은 제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은 지방에서 먼저 만들어진 조례의 중심적인 내용과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이슈 그리고 향후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도시농업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은 광명시이다. 광명시는 2009년 12월 31일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서 수원시는 2010년 3월 29일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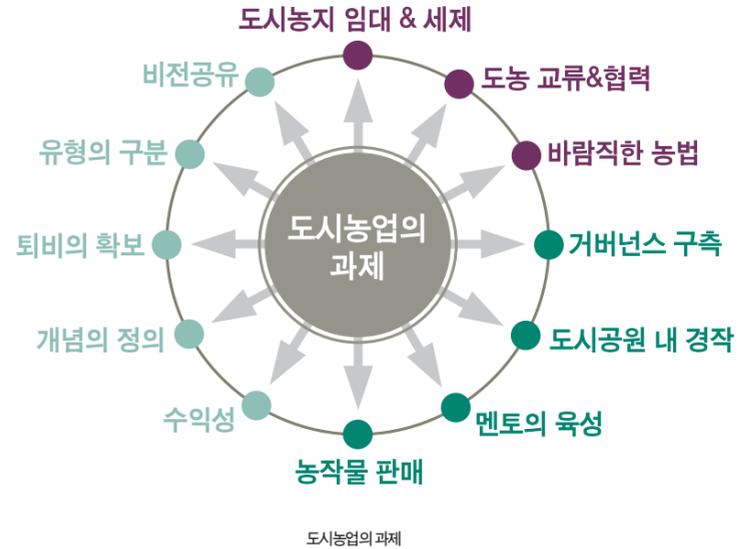
부평도시농업공원 (사진: 인천광역시 인터넷신문 l-view)



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안양시는 2010년 10월 7일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강동구는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1년 5월 3일에는 경기도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 광명시는 유기순환 농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1,000㎡ 이상의 시민농장 조성이 특징이다. 수원시는 생태농업과 농업유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

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한다. 서울시 강동구는 친환경농업과 도시텃밭 그리고 주말농장을 포함하고 있다. 자가 퇴비 만들기와 환경친화적 농법의 사용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도시농업공원을 강조하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각 조례에서는 공동체 회복, 각종 유형의 텃밭의 활성화와 농업공원 조성을 담고 있다. 위원회에 의결기능이 부여된 곳과 자문 정도만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도자를 교육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조례가 담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도시농지의 임대와 세대에 대한 것이다. 1996년 1월 1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자는 자유롭게 임대가 가능하다. 법 시행 후 소유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불가하다. 농촌의 경우 대개 상속이나 이농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1ha까지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넘을 경우에는 자경(自耕)하거나 매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장이나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지가 급등으로 임차료가 크게 상승하여 영농이 어렵다고 인정된 농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농지법상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및 수탁최소면적(1,000㎡ 미만)의 농지는 제외된다. 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고 저율인 0.02%이나 도시지역의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감하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결국 그동안 경작을 하지 않은 도시 내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한다고 해도 세금 감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 도시공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1989년에는 특례를 만들고(농지제도로 정착), 1990년에는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문제해결을 완성했다.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농교류 활성화이다. 기존에 농촌에서 해오던 농업(이하 전원농업)인과의 갈등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도시에서 배추와 상추를 길러서 자급하면 이를 공급하던 전원농가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소위 걱정론과 상생론이 공존하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제한되어 있고, 농촌에서는 사계절 농사가 가능하니 충돌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적인 구조로는 프로와 아마의 구도이다. 전원농가는 프로구단이고 도시농가는 아마구단이다. 아마추어가 실력을 쌓으면 프로로 가듯이 도시에서 농업을 잘 하다 보면 귀농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역시 농촌에서 농사를 하는 필자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은 도시에 와서 살고 싶어도 정 붙일데 없고 소일거리도 없다. 그렇다고 차를 타고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수요를 잘 교환하면, 말 그대로 분명 상생의 구조는 존재한다. 귀농이 이민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도시에서 충분히 교육받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귀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농교류활성화센터라는 재단법인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무엇인가는 돌파구를 찾아서 행동할 때이다. 셋째, 바람직한 농업의 문제이다. 광명시는 유기순환농법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친환경 혹은 유기농법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슈가 상존한다. 하나는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한 편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흙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농림부 고시로 정확하게 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농약사용안전기준의 준수,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우량비료의 사용을 비롯하여 기존의 제도 내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원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흙을 잘 살리면 비료와 농약을 안 쓰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된다.

넷째,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다. 결국 금번 법의 제정으로 걱정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다. 민간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이 법 제정으로 인해 틀에 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공영도시농장과 민영도시농장을 개설할 수 있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단체는 시·군에 등록하고 활동하면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전원농업을 주도해온 기술원과 기술센터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면 도시농업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관건은 공공이 너무 개입하면 미래의 방향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분양과 임대를 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를 운영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경기도처럼 민과 관이 힘을 합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도시공원 내 경작의 허용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을 주도해온 전국귀농운동본부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도시 내 공간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도시공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된다. 공원은 정원에서 출발했다. 정원의 원형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황기원 교수님께서 이론을 정립하셨다. 정원은 위요와 생산 그리고 열락 기능을 가진다. 도시공원에 농사를 하지는 행위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닌 생산 기능의 부활이다. 법은 김학용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시작되었고 의원실과 농림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같이 준비하였다. 농림부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용산공원정비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생산공원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서 가능한지? 각 지방정부에서도 도시공원에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한 경작 행위들이다. 이를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은 도시공원법 개정도 의원발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내 정해진 장소에서 도시농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여섯째 멘토(mentor)의 육성이다. 소위 도시농사꾼을 육성하는 것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를 포함하여 각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진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공동과제로 교육프로그램과 자격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일곱째, 잉여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것이다. 도시농업은 자급자족이 원칙이다. 생산하여 파는 업으로 발전하면 일단은 전원농업과 부딪치게 되며, 원래의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범위에서 이웃끼리 물물교환을 하거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남는다고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의 Community Garden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잉여농산물을 나누어 먹거나 작은 장터 형식으로 해서 판매도 한다. 판매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다. 법의 시행령(안)에서는 업(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으나 수정될 수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데, 식물공장을 도시농업 범



주로 본다면 업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역시 업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업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업에 대해서는 일단 법에서는 얼어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다. 이후 운영에서 표적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덟째, 수익성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수록 좋다. 수익성이 좋으면 활성화는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수원시는 무상으로 분양했다. 대신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로 분양했다. 강동구는 1,800구좌를 분양했는데 분양단위는 6평, 연간 1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했다. 이 중 5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한다. 송파구는 250구좌이고 분양단위는 3평이며 임대료는 연간 6만원이다. 일본에서는 5평에 100만원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다. 아마도 수익성 부분은 공공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선될 것이다. 공공의 과도한 지원이 민간의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도시민의 농사의 일상화가 목표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수익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씩 확보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홉째 개념의 정의이다. 도시농업은 무엇인가? 제정된 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주거, 사업, 공업, 녹지)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의 지역에서(비록 불법이지만) 텃밭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논쟁이 된다. 법을 제정하면 불법을 없애야 한다는 측면과 소위 게릴라 농업으로 장려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어떤 분들은 공간으로 정의하지 말고 주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도시농사꾼이 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향후 이 부분은 실천과 논쟁 속에서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농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개념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들의 노력과 고민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퇴비의 확보, 현실적인 유형의 구분, 비전의 공유가 과제이다. 오줌을 사용하여 자가 퇴비를 만들고 도시 가로수의 낙엽으로 퇴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관련시설 중에 퇴비장을 포함시켰다. 2011년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는 낙엽 퇴비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현재 법에서는 도시농업의 유형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더욱 세밀한 구분을 시도하고 있으나 신중한 수준은 아니다. 이 유형의 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 내 조성되는 커뮤니티 가든에 관심이 많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공유이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자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작되는 법을 잘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작단계에서의 동상이몽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할 것이다.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는 2011년 매달 한 번씩 만나서 비전을 공유하고 문제를 발굴하여 토론하였다.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동의 비전을 가져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엿보다

박승진 디자인loci 소장

아파트 단지에 텃밭?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 위치한 동일하이빌 단지(2005년 입주)는 당시에 흔치 않았던 도시농사공간을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건설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던 경우이다. 주거단지 외곽지역의 유휴농지나 자투리 토지를 이용하여 주말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단기간 이용료를 받고 일정 규모의 텃밭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농사용 텃밭이 아파트단지 내 조경공간의 일부로 애초부터 기획되고 설계되는 경우는 지금도 드문 일이다.

이 단지의 조경설계는 2003년도에 진행되었다. 이 무렵은 아파트단지의 조경 특화설계가 한창 주가를 발휘하던 때로, 대부분 분양성 제고를 위해 조경공간의 명품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다. 여러 개의 주계약원들을 단지내 조경공간에 분산 배치한다거나, 특정한 고가의 수목들을 단지 주요부에 배치하는 등 단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화제성을 유발시키는 설계 아이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용인시 동백지구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택지개발지구안에 여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이 단지는 가족정원원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단지 내 조경공간 일부를 경작지로 활용하는 설계안을 만들었다. 가족정원은 구획당 약 4.5㎡의 크기를 갖는 경작지와 바비큐활동을 위한 작은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텃밭의 특징상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주거동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조성하였고, 총 90세대가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공간구획을 위한 유실수 수벽, 바비큐테이블, 화로대, 물공급용 물확, 농사용구 보관함 등이 보조적인 장치로 제안되었다(그림 1, 2, 3참조).

텃밭에 사람들이 모인다

2005년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입주 초년도에는 운영 노하우나 활용방법 등이 구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년차부터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설계당시 90개로 구획되었던 경작공간을 현재는 190개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4참조). 이 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743세대인데 이 중 약 400여 세대가 텃밭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용 희망자가 많아서 매년 2월에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공지를 하고, 추첨을 통해 주거동의 위치와 상관없이 190개의 텃밭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텃밭을 배분받은 세대들은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위치를 교환하기도 한다.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전 연도에 텃밭을 분양받은 세대는 그 해 추첨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전체 190개 구획 중 2개소는 단지내 어린이집 전용으로, 4개소는 노인정에 고정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2010년도까지는 연간 2만원의 사용료를 받아서 작업에 필요한 일부 자재(삼, 호미, 물뿌리개 등)를 대여하였으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연간 1만원에 수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분양 추첨이외에는 텃밭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시기별로 재배 추천 아이템들을 알려주는 정도다. 봄



에 경작하는 채소류는 상추, 고추,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아욱, 쑥갓 등이며 9월이나 10월에는 무나 배추를 재배하여 김장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들이 많다. 약 5㎡의 텃밭에서 배추 20포기 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정원 내 바비큐 시설과 피크닉테이블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개별적인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단지계획의 일부로서 텃밭계획

최근 들어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단지에서의 도

시농업은 비록 소규모 취미활동의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농사체험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녹지공간은 중요한 조경적 요소이다. 그러나 주택단지는 도심의 여느 공공공간과는 다르게, 가족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이므로 일부 녹지공간을 생산의 기능을 가지는 실용적 공간으로 전환해보는 시도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단지 내 농사공간의 계획이 단순히 자투리 녹지의 활용대안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초기의 단지배치계획의 단계에서 중요한 상위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1. 단지배치도



그림 2. 설계당시 가족정원원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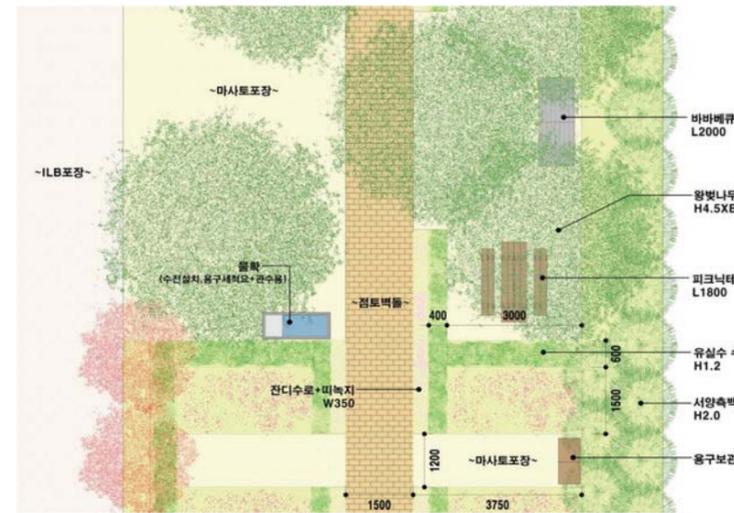


그림 3. 설계당시 가족정원원내 세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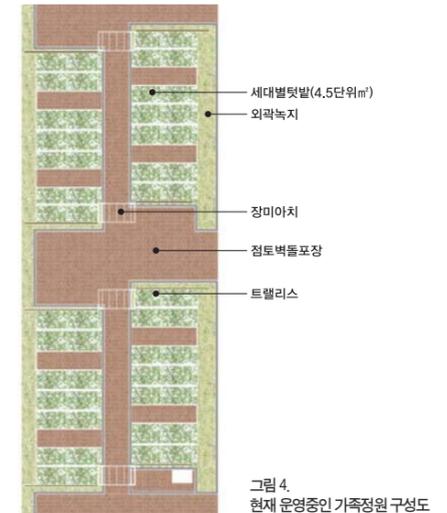


그림 4. 현재 운영중인 가족정원원 구성도

공원형 도시농업

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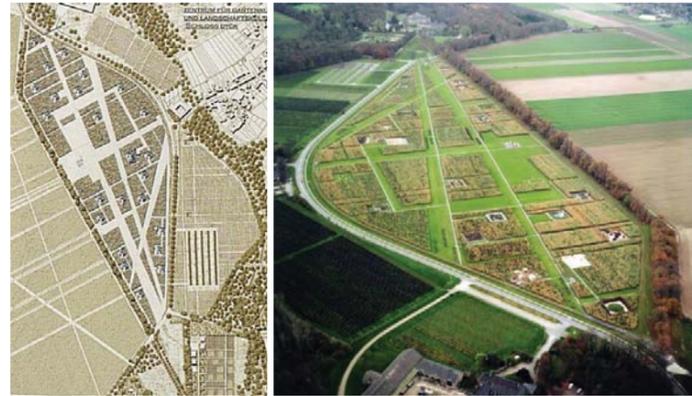
11월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의 유형에 공원형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있다. 공원형 도시농업은 생산력을 가진 공공공간으로 도시중심이나 도시주변에 광범위하게 계획된 도시농업공간이다. 이러한 공원형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경의 역할은 생산적 프로그램과 경관의 미적 가치를 접합하여 다양한 도시 구성원들에게 생산, 여가, 참여,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을 갖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농업이라 하면 우리는 채소밭이나 과수원 등의 식용작물재배를 먼저 떠올린다. 도시농업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고, 이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절감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원예작물/약용작물 재배나 양봉산업 등도 도시농업활동에 포함된다.

12월초에 독일의 대표적인 조경작품들이 대거 소개된 해외조경 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된 작품 중에서 도시지역에 위치하지 않아 엄격하게는 도시농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생산적 기능을 조경예술과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공원형 도시농업의 사례로 참고할 작품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이크 펠트 억새농장

400년의 역사를 지닌 다이크 성(Dyck Castle)의 건너편에 위치한 25헥타아의 다이크 펠트(Dycker Feld)는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리아 지역(North Rhine Westphalia) '정원축제'



다이크 펠트 억새농장 (Miscanthus Farm, Dycker Feld)
 위치: 독일 Kreis Neuss, Dyck schloss
 조경설계: Stefan Lenzen, RMP Landschaftsarchitekten
 완공: 2002년
 사진제공: Stefan Lenzen/Elizabeth Sikiaridi

와 '유로가 2002 플러스(Euroga 2002 plus)'를 개최하면서 기존의 농경지를 현대식 정원으로 재구성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탄생하였다. 이 공모전의 우승작은 본(Bonn) 출신의 스테판 렌젠(Stefan Lenzen)의 작품이었는데, 전통적인 정원을 재현하기보다는 주변 농경지의 모습을 디자인의 근거로 삼아 생산성을 가진 현대식 공원을 계획한 것이었다.



다이크 펠트의 조경공간 중에서 억새농장(Miscanthus Farm)은 녹색연료인 억새를 조경재료로 이용한 사례이다. 억새(*miscanthus sinensis*)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키가 4m까지 크는 관상용 초본식물로 생장이 왕성하여 척박한 땅에서도 특별한 관리없이 재배가 가능하고 연소시에도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녹색연료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작물이다. 수확한 억새는 고품 바이오 연료 또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배출량을 나라마다 엄격하게 제한하자, 억새의 대량재배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억새를 수확한 후에는 억새밭에 숨어있던 24개의 테마정원들이 넓은 평원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름에 다시 억새가 자라나면 드러났던 정원들은 다시 억새의 선명한 녹색물결 속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시각적 즐거움은, 가을이면 마른잎이 속삭이듯 사각거리는 황금들판으로 다시 태어난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지극히 정적이고 수평적이었던 대장지는 바람에 날리는 억새에 의해 동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억새농장의 패턴(Pattern)과 축(axis)은 이전 농경지의 패턴을 상징하고, 길게 이어진 잔디밭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과거-현재-미래로 연결한다. 억새를 재배하여 녹색연료로 활용하는 생산적 기능과 공원의 휴식/여가기능의 결합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공원형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공원형 도시농업의 미래

공원형 도시농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기본계획단계 또는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농경지에서 땅의 생산력이 중요한 만큼, 생산적 경관을 그린 필드에 설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공원형 도시농업이 공원 등의 공공용지에 조성되는 경우, 생산의 주체와 유지/관리의 주체가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논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생산된 작물을 판매하여 수익금 분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의 투자로 연결시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농업공간에 대한 현실적인 설계제안은 사업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생산적 도시, 자급자족적 도시, 탄소발자국 저감도시,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형 도시농업의 적극적 도입으로 새로운 도시구조의 패러다임이 요구될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6호, 2011.11. 2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를 이용하여 흩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전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자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입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농자재 등의 제공·교환·폐기·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096호, 2011.11.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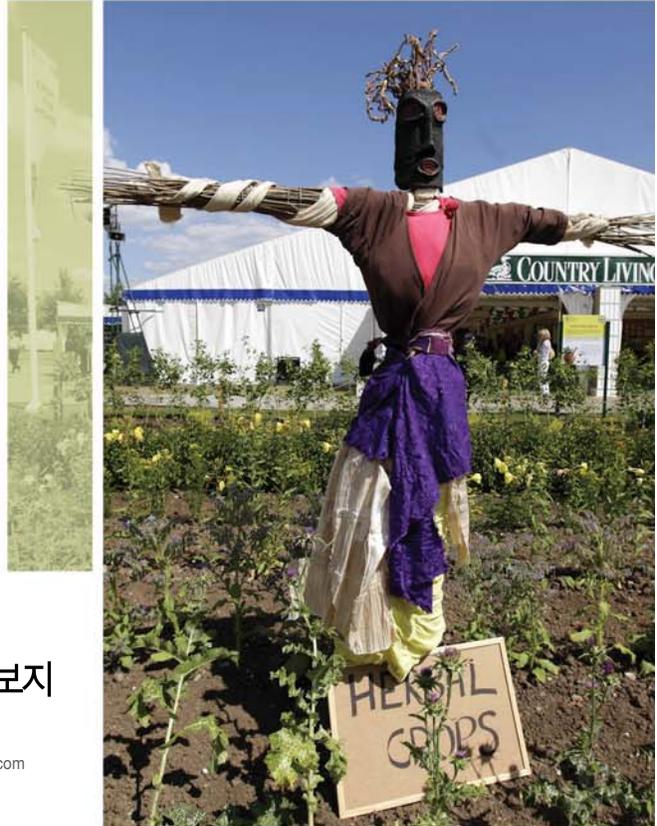
발행인 | 양홍모(사)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 | 성종상(서울대)
책임편집위원 | 박승진(디자인 loc), 이유미(서울대)
편집위원 | 권진욱(연세대) 김여진(서울시립대) 박문호(서울시립대)
윤상준(제이엠지) 최정민(순천대)
간사 | 유은자 백정희
2012년 1월 31일 발행 | 발행처 _ (사)한국조경학회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2년 3월 31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14호의 주제는 '지역성'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한국조경학회나 리팬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lafent.com

기간 2012년 3월 1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kila96@chol.com
문의 031-955-6042-4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



(주) CA조경기술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6
신한양빌딩 4층(우135-897)
Tel. 02-543-4454 Fax, 02-543-4450
E-mail, CA03@chol.com
Homepage, www.cadesign.co.kr

